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39호 2021. 12. 16.(목)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0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00호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행정안전부령 제57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천군에 소속된 공무원에게”를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안규정 기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기타 지방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을 제외한다)”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54조제1항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6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를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를 “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4. 그 밖에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및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성과금의 신청, 심사 및 지급 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확대하여 예산성과금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통·폐합(제5조)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제6조, 제7조, 제8조 삭제)

다. 예산성과금의 신청, 심사 및 지급대상 확대(제14조제3호·제4호)

-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 그 밖에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